2025년 낭그늘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① 본원의 입소정원은 9명이다.
②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1. 공단을 통한 모집
2.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모집
3.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한 홍보
③ 입소대상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등급판정자 중 시설급여 인정 대상자로 한다.
④ 입소신청자는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본원의 입소 승인 절차를 거쳐 입소계약을 체결한 후 입소한다.

2. 입소계약
① 입소계약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본원과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, 등급 갱신 및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. 입소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기명날인한 계약서 1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3. 입소보증금, 월 이용료, 기타 부담액 및 납부
① 본원은 수급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입소보증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을 예치할 수 없다.
② 급여항목의 수가는 공단의 고시에 따르며, 수급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.
③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본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4. 외박기간의 비용
①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원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하되, 1회당 최대 10일(1개월에 15일)까지 산정할 수 있다.
②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(기준시간은 밤 12시)에 산정하며,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,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5. 수급자, 보호자의 권리, 의무
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.
1.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2.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
3. 본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
4. 본인에게 제공되는 급여내용에 대해 알 권리
5. 본원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

을 받을 권리
6.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7.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8. 본원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9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
②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.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5. 기타 본원 규칙 이행 의무
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.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2. 수급자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3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④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.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5.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6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1.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
2.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3. 타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4. 월 이용료를 계속하여 3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(단, 본원이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.)
② 수급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수급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7.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의 협의를 거쳐 입소(이용)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1.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4. 물가인상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

② 전항 제2호에 따른 변경은 수급자(보호자)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.
③입소(이용)료 등 비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여야 한다.

8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① 본원은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.
1.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· 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
2.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
3.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
4.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
5.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, 조언하는 서비스
6. 촉탁의사의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
② 수급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기관·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9.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
① 본원은 수급자가 건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.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.
② 수급자의 신체적, 정서적으로 신체활동의 제한 또는 이동제한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유와 경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0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
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(조무)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2.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3. 간호(조무)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4. 간호(조무)사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에 관한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병원진료는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원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리할 수 있다.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.
2.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
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각종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3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인근병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후송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③ 수급자의 질환의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11. 사망 시 신원인수

① 수급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.

② 보호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2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본원의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.

12.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

① 시설은 수선,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수급자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수급자는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,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 변상에 관한 사항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
2. 본원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
3. 본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
4. 수급자가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

④ 수급자는 본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⑤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⑥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.

13.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원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3. 원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4. 학대(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

말한다)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2. 본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본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1. 동료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④ 본원의 수급자 대한 배상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사에 의해 배상하며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4. 이용계약서의 해석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본원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